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공 보

제789호 2019. 1. 10.(목)

안내문

◇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절차 및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발행(10일 단위)되며 공보발행 방식이 전자식 형태로 전환되어 서구청 홈페이지(www.dgs.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구청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 서구소식⇒ '서구공보'에서 열람

◇ 공보발행 절차

【원고접수마감】 매월 8일, 18일, 28일(D-2)

【편집】 접수마감 익일(D-1)

【게시】 발행일(D일)

◇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다음날"발행되며, 접수마감 이후 접수분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 게재됨으로 특별히 게재되어야 할 원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송부하여 주시고, 각종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의 업무는 공보 발행 일자를 참조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람									

발행 : 대구광역시 서구 편집 : 문화홍보과(TEL : 663-2161, FAX : 663-2169)

◀ 대 구 광 역 시 서 구 ▶

입법 예고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31호 3

공 고

⊙ 『내당1지구』 조정금 공탁 예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0호 19

⊙ 임대차계약 신고내역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24호 21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투표청구 서명인수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43호 22

⊙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44호 23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45호 24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31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법률 제15528호, 2018. 3. 27. 공포, 6.28.시행)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심도 깊은 숙의가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예산기구(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법령상 명확하지 아니한 주민참여예산 위원 해촉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법률 제15528호, 2018. 3. 27. 공포, 6.28.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범위 개정(“예산편성 과정”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안 제1조~제5조, 제7조~제8조, 제11조, 제13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도 깊은 토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신설(안 제18조)

○ 주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신설
가.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2조)
나. 지역회의 기능(안 제23조)
다. 지역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안 제24조)
○ 법령상 명확하지 아니한 위원 해촉 규정 삭제(안 제15조제2항제4호)
○ 현행 제도 미비점 보완
가.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문 신설(안 제19조)
나.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 운영 조문 신설(안 제20조)
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홍보활동 강화(안 제2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25 / 팩스 : (053)663-2119
- 이메일 : inchang3@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과정”을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임·직원”을 각각 “임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편성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3조 중 “예산편성시”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로 한다.
제4조 중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로 한다.
제5조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 삽입한다.
제6조 중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8조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9조 중 “구 공보,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한다.
제10조 중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1조 중 “예산편성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별 대표성”을 “지역별, 성별 균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제25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지역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지역회의 등”로 “공청회토론회”를 “공청회, 토론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여비를지급할”을 “여비를 지급할”으로 한다.

제3장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주민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 · 집행 · 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 ·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제26조로 한다.

제4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장의 수가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의 총괄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구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앞에 “제5장 지원 등”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②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사람----. 1. ---------- 사람 2. ---------- 임직원 3. ---------- 임직원 ②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	제3조(법령준수 의무)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

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주민의 권리)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신 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제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사람은 ---------- -----.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 -- 인터넷 ----------.
제10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 적용 범위-------- ----------.
<신 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 ----------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

1.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별, 성별 균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이내로 한다.	③ ---------- 사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생 략)	제15조(위원의 임기) ①(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

	민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주민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신 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신 설>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장의 수가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의 총괄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 설>	제2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

	장은 구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5장 지원 등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① ----- 위원회, 지역회의 등----------. ② ------ 위원회, 지역회의 등------공청회, 토론회----------. ③ ---------- 여비를 지급할 -------.
제19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0호

『내당1지구』 조정금 공탁 예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7항에 의거 「내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8명(붙임참고)
2. 공고기간 : 2019. 1. 3. ~ 2019. 1. 18. (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3-663-32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2019년 1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지적재조사사업 공탁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내역

연번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조정금(원)	소유자		등기반송내역
	동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1	내당동	877-7	대	33	877-7	대	28.0	-5.0	1,900,000	윤*은	중구 수동	주소불명
										윤*모	남구 남산동	
										윤*윤	가창면 단산동	
										윤*섭	공산면 반곡동	
										윤*섭	남구 대명동	
										윤*모	동구 지산동	
										윤*오	남구 남산동	
										윤*섭	남구 남산동	
2	내당동	884-8	대	43	884-8	대	32.5	-10.5	3,990,000	윤*모	남구 남산동	주소불명
										윤*윤	가창면 단산동	
										윤*섭	공산면 반곡동	
										윤*섭	남구 대명동	
										윤*모	동구 지산동	
										윤*오	남구 남산동	
										윤*섭	남구 남산동	
										윤*은	중구 수동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24호

임대차계약 신고내역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관내 임대주택에 대한 2018년도 4/4분기 임대차계약 신고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 임대차계약 신고내역

(단위 : 천원)

사업자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유형	전용면적(㎡)	세대당 대출금	임대조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시작	종료
김**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16, 107동708호 (평리동,평리롯데캐슬)	아파트	84.83	165,000	30,000	100	20181211	20201210
정**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로13길21,408호(내당동)	아파트	59.63		130,000	-	20181026	20201025
임**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50길 27-27 2층	단독주택	92.19		150,000	-	20190225	20210224
박**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229 202호(평리동)	단독주택	43.13		1,000	240	20181121	20191120
박**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29 205호(평리동)	단독주택	43.13		3,000	300	20181218	20191217
권**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49길 28-11 (비산동)	단독주택	149.58		500	150	20181023	20211023
최**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8길 49, 5동 102호 (내당동,내당보성홍실아파트)	아파트	71.66	100,000	140,000	-	20181012	20201011
이**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707, 103동 203호 (내당동,내당광장1차아파트)	아파트	84.99		180,000	-	20181018	20201017
박**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29 401호(평리동)	단독주택	172.54		50,000	-	20181015	20191014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43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투표청구 서명인수 공고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대구광역시 서구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 2019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단위 :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주민투표청구 서명인 수	비 고
총수	내국인	외국인		
163,617	163,486	131	13,635명 이상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이상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44호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와, 주민이 구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이상의 주민수

(단위 : 명)

기 관 명	19세 이상 주민수	연서 주민수 (비율)	비 고
대구광역시 서구	163,600	4,090명 이상 (2.5%)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9-45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 **서구청장** (단위 : 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비 고
	서명인 수	최소 서명동 수	동별 최소 서명인 수		
			동 명	최소 서명인 수	
163,600	24,540이상	6개동	내당1동	1,361	
			내당2.3동	1,460	
			내당4동	1,692	
			비산1동	1,410	
			비산2.3동	1,387	
			비산4동	1,396	
			비산5동	897	
			비산6동	1,103	
			비산7동	1,544	
			평리1동	1,107	
			평리2동	1,086	
			평리3동	1,469	
			평리4동	1,692	
			평리5동	837	
			평리6동	842	
			상중이동	1,692	
			원대동	1,237	

□ 서구의회 의원

(단위 : 명)

선 거 구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비 고
		서명인 수	최소 서명 동 수	동별 최소 서명인 수		
				동 명	최소 서명인수	
서 구 가 선거구	34,306	6,862이상	1개동	내당1동	344	
				내당2.3동	344	
				내당4동	344	
서 구 나 선거구	52,320	10,464이상	2개동	평리2동	524	
				평리4동	524	
				평리5동	524	
				평리6동	524	
				상중이동	524	
서 구 다 선거구	33,907	6,782이상	2개동	비산1동	340	
				비산5동	340	
				비산7동	340	
				원대동	340	
서 구 라 선거구	43,067	8,614이상	2개동	비산2.3동	431	
				비산4동	431	
				비산6동	431	
				평리1동	431	
				평리3동	431	